

전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52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529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36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변론종결 2022. 7. 14.

판결선고 2022. 9. 1.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36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대 337㎡ 중 2/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 11. 2. 접수 제1203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로, 2018. 11. 11.에 개최된 원고의 총회는 정기총회이고, 위 정기총회에서 C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적법·유효하므로, C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고 강조하여 주장하나,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각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